- 신청가능한 민원사무목록
 - 민원사무명
 - 업무분류
 - 민원분류
 - 。 체류
 - 재입국허가(복수)
 - ▼ 재입국허가(복수)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

• 대상: 아래 ⓐ~ⓓ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이므로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국 후 해당 기간 내에 재입국 가능⑥ 등록외국인: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동반(F-3), 결혼이민(F-6)~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가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단, 아래 ⑥, ⑥, ⓒ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국 후 재입국 가능⑥ 영주(F-5) 자격자: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외동포(F-4) 자격자: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⑥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복수 재입국허가 신청 대상

- **대상**: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동반(F-3), 결혼이민(F-6)~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사람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상 ~ 최대 2년까지 국외 체류 후 재입국하려는 경우
- 신청 : 출입국기관 방문 신청, 민원대행 신청,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hikorea.go.kr) 전자민원 신청
- 제출서류 및 수수료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A계열 자격(A-1, A-2, A-3)은 외교관신분증, 대사관 협조 공한, 재직증명서 등 재임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 추가 제출수수료 : 5만원* 수수

료 면제 대상◎ 아르헨티나(14세 미만에 한함), 대만, 튀니지 국적자◎ 정부 등의 초청 국비장학생인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체류자격 소지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수수료 면제 협조 요청을 받거나 「정부초청외국인장학증명서」 제출한 자◎ 외교(A-1), 공무(A-2), 협정(A-3),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소지자

■ 근무처변경

▼ 비전문취업(E-9) 근무처변경허가

비전문취업(E-9) 근무처변경허가

• 전자민원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사업장변경 승 인을 받은 후 취업활동을 개시하기 전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근무 처변경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화면입니다.

방문예약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근로자는 근무처변경허가를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신청하기 위해 방문민원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방문하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예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개시일 전 에 방문예약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온라인 전자민원으로 신청해 주 시기 바랍니다.

비서류	• 방문신청 시 • 여권, 외국인등록증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체류지 입증서류 •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경우 •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은 고용센터에서 전송된 자료 불러오기로 제출 • 체류지 입증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
전자민원 수수료	99,000원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된 민원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처리과정	전자민원① 신청 -> ② 체류자격에 따른 제출서류 첨부 -> ③ 수수료결제 -> ④ 접수 및 처리 -> ⑤ 처리결과 확인(마이페이지 > 전자민원신청현황) 방문예약 ① 방문예약 -> ②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접수 및 처리	• 접수시간 • 전자민원: 평일 07:00부터 22:00(토, 일, 공휴일제외) • 방문예약: 연중무휴 • 처리시간 •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처리*단, 서류 보완, 사범처리 시 7일 이 상소요될 수 있음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관련법/제도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 변경,추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근무처 변경,추가)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기타	 전자민원 신청은 고용센터로부터 사업장변경 승인을 받은 이후 부터 신청 가능 신청자격은 사업장변경 승인을 받은 해당외국인, 변경된 사업 장의 아이디로 신청가능
주의사항	• 고용센터로부터 근무처변경 신청에 필요한 고용허가서와 표준 근로계약서 정보가 전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계약서 상 근로개시 일 다음날(익일) 신청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하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을 방문하여 출입국관 리법위반 여부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고 처리하시기 바람

■ 체류기간연장

▼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

• 전자민원

。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전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아래 해당자만 전자민원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등록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 부/모 등 신청의무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동반(F-3),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 신청시 주의 사항: 현재 방문동거(F-1) 체류자격 소지자중 아래 체류목적 해당자에 한하여 전자민원을 통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1) 국적신청한 사람(F17), 합법체류외국인의 국내 출생 자녀(F18)2) F4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1-11)3) F2의 배우자(F1-12), 미성년 유학생 부모(F1-13)4) 우수인재, 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F1-15)5) 외국국적동포의 귀화허가 등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F1-71)6)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F1-72)
- 가사정리, 비세대 동거인, 결혼이민자 가족, 혼인단절 결혼이민자, 가사보조인, 성인 미혼친자, 친척방문, 가족동거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제외: 산업연수(D-3), 기업투자(D-8), 특정활동(E-7), 거주(F-2), 국민의배우자(F-6), 난민(F-2-4), 재외동포(F-4), 영주(F-5), 기타(G-1)
-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청이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전자민원으로 신청가능한 체류기간 만료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 해당일에 신청중 심각한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신청이 불가 할때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예약

모든 등록외국인은 체류기간 만료전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에 방문 예약이 가능합니다. (단,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없는 영주(F-5)자격은 제외)

구비서류	공통서류 신청서 (제34호 서식)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체류자격별 세부 안내사항과 제출서류는 체류자격별 안내 메뉴얼(체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전자민원 수수료	 50,000원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된 민원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수수료 면제국가 : 아르헨티나의 14세 미만
처리과정	전자민원① 신청 -> ② 체류자격에 따른 제출서류 첨부 - > ③ 수수료결제 -> ④ 접수 및 처리 -> ⑤ 처리결과 확인(마이페이지 > 전자민원신청현황) 방문예약 ① 방문예약 -> ②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가능
접수 및 처리	 접수시간 전자민원: 평일 07:00부터 22:00(토, 일, 공휴일제외) 방문예약: 연중무휴 처리시간 일반사항 10일, 조사필요사항 2개월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관련법/제도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내지 제37조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1조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기타	 전자민원은 체류기간만료일 4개월 전부터 근무일 기준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 가능 (단, 체류기간 만료기간이 4개월 이상 남아있는 자가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하는경우허가일부터 체류기간을 기산하여 처리) 방문예약은 근무일 기준 체류기간만료일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 가능

주의사항	방문동거(F-1, 17미만)외국인의 경우 현재 체류지가 부/모
	등 신청의무자의 주소(또는 체류지)와 일치여부를 확인 후
	일치하는 경우에만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
	하시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외국인의 체류지를 변경
	후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
	다.(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려)

▼ 재외동포(F-4) 거소신고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재외동포(F-4) 거소신고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전자민원

- 재외동포(F-4) 거소신고자가 체류기간 만료전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전자민원으로 신청시는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전부터 1일전 (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체류기간이 1일이 남지 않은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거소신고자가 17세 미만인 경우 부/모 등 신청의무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청이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전자민원으로 신청가능한 체류기간 만료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 해당일에 신청중 심각한 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신청이 불가 할때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예약

• 모든 등록외국인은 체류기간 만료전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에 방문 예약이 가능합니다. (단, 체류기간 연장 이 필요없는 영주(F-5)자격은 제외)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제34호 서식)
-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 거소신고증
- 체류지 입증서류 (최근 1년간 국내에 6개월 이하 체류자는 면제)

	• 추가서류 ◦ 결핵검진확인서(대상자에 한함) ◦ 국적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상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국, 구소련지역 국적 동포 제외): 기본증명 서(2008.1.1 이후 폐쇄된 경우) 또는 제적등본(2008.1.1 이전 제 적된 경우) 즉 유의사항 - 출입국·외국인관서장(출장소장)은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신분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 수수료	 50,000원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된 민원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수수료 면제국가 : 아르헨티나의 14세 미만
처리과정	전자민원① 신청 -> ② 수수료결제 -> ③ 접수 -> ④ 처리 방문예약 ① 방문예약 -> ②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접수시간	• 접수시간 • 전자민원: 평일 07:00부터 22:00(토, 일, 공휴일제외) • 방문예약: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 가능 • 처리시간 • 전자민원: 일반사항 10일, 조사필요사항 2개월 • 방문처리시: 동 민원은 통상 14일정도의 처리시간이 소요되나, 사무소 방문민원의 수에 따라 다소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관련법/제도	• 재외동포법제10조 재외동포법시행령 시행령제16조,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내지 제37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1조, 출입국 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기타	전자민원은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전부터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 가능하며, 방문예약은 체류기간 만료일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가능합니다.(단, 체류기간 만료기간이 4개월 이상 남아있는 자가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일 부터 체류기간을 기산하여 처리)

주의사항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시 해당본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연장신청 불가)**17미만** 자녀의 경우 현재 체류지가 부/모 등 신청의무자의 주소(또는 체류지)와 일치여부를 확인 후 일치하는 경우에만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시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외국인의 체류지를 변경 후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려)

▼ 단기체류자 체류기간연장허가

단기체류자 체류기간연장허가

-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의 체류자격으로 90일 미만의 체류기간을 부여받고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동 민원은 전자민원이나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예약이 가능한 민원입니다.
- 다만, 기계판독식여권(Machine Readable Passport)이 아닌 여권을 소지한 경우에는 전자민원으로 처리가 불가하므로 사전예약만 가능합니다.
-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청이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전자민원으로 신청가능한 체류기간 만료 1일전(토, 일, 공휴일제외) 해당일에 신청중 심각한 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신청이 불가 할때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여권,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전자민원 수수료

- 50,000원
-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된 민원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처리과정

① 신청 -> ② 수수료결제 -> ③ 접수 -> ④ 처리

방문예약

- ① 방문예약 -> ②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 *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현황

에서 확인 가능접수시간

• 접수시간

전자민원: 평일 07:00부터 22:00(토, 일, 공휴일제외)

방문예약: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 가능

• 처리시간

전자민원: 3일이내(72시간)

。 방문처리시: 관할사무소 처리시간에 따름

처리기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소관부처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체류관리과관련법/제도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전화번호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기타전자민원 및 방문예약은 체류기간만료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 가능

▼ 유학생 담당자의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체류기간 연장허가

유학생 담당자의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체류기간 연 장허가

유학생(D21,D22,D23,D24,D25,D26,D27,D28) 및 어학연수생(D41)
 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신청으로 각 대학의 유학생정보시스템 담당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전자민원은 체류기간만료일 4개월 전부터 근무일 기준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체

류기간 만료기간이 4개월 이상 남아있는 자가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일부터 체류기간을 기산하여 처리)

구비서류	• 공통서류(유학생정보시스템에 해당학생 학적 정보가 사전입력된 경우 제출 면제) • 재학(연구)을 입증하는 서류: 재학증명서, 교환학생 연장증명서, 연구생 증명서 등 •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성적증명서, 출석확인서 등 • 체류지 입증서류 • 추가서류 • 재정입증서류(대상자에 한함)
수수료	 50,000원(수수료는 전자결제로 납부) 정상적으로 접수처리한 민원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수수료 면제 : 정부 등 초청장학생 수수료 면제(해당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에 수수료 면제 협조요청이 있는 자)
처리과정	① 온라인 신청서작성 -> ② 수수료 전자결제 -> ③ 담당자접수 및 처리 ④ 처리결과 마이페이지에서 확인(보완요청 시 재신청)
접수 및 처리	 접수시간: 평일 07:00부터 22:00까지 신청가능(토, 일, 공휴일제외) 처리기간: 일반사항 10일, 조사필요사항 2개월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관련법/제도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31조 및 제94조의3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기타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청이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시 해당본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연장신청 불가)

■ 고용변동신고

- (H2, E9)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발생 통합신고 : 전자 민원 only
- ▼ (H2, E9 제외)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발생신고

(H2, E9 제외)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발생신고

- 외국인을 고용한 자 또는 외국인산업연수업체의 장이 아래 사유 발생시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 또는 출장소장 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동 민원은 전자민원이나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예약이 가능한 민원입니다.
- 1. 고용/연수외국인이 소재불명되었을 때(무단이탈)
- 2. 고용/연수외국인이 해고 또는 중도 퇴직된 때
- 3. 고용/연수외국인이 사망한 때 : 사망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
- 4. 고용계약의 중요내용이 변경된 때
 - 。 고용계약기간이 변경된 경우
 - 고용주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 지가 변경된 때. 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학교의 장 이나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외
 - 동일한 사업체의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업 장을 근무장소로 추가한 때 (* 동일한 사업체라고 함은 법인 또는 개 인 사업자로써 업무의 동질성,회계/노무관리의 통합운영 등이 확인 되는 경우를 말함)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한 때 또는 파견사업장을 변경한 때
- 5. 고용/연수 외국인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 6. 전자민원으로 신고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고가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고 마감일 심각한 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신고가 불가하여 당일 처리가 불가할때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고용/연수외국인이 소재불명되었을 때(무단이탈) : 고용연수외 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
- 고용/연수외국인이 해고 또는 퇴직된 때 : 고용연수외국인변동 사유발생신고서

	 고용/연수외국인이 사망한 때 :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 사망진단서 등 관련서류 고용계약의 중요내용이 변경된 때 고용계약기간이 변경된 경우 :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 계약서 고용주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근무처의 이전으로그 소재지가 변경된 때 :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동일한 사업체의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업장을 근무장소로 추가한 때 :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동일 사업체 입증서류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한 때 또는 파견사업장을 변경한 때 :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발생신고서, 입증서류 고용/연수 외국인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한 때 :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 기타 입증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과정	전자민원① 신청 → ② 사유를 입증하는 제출서류 사본 첨부 → ③ 접수 → ④ 처리 → ⑤ 처리결과확인(마이페이지 > 전자민 원신청현황) 방문예약 ① 방문예약 → ②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 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접수및 처리기간	• 접수시간 • 평일 07:00부터 22:00까지(토, 일, 공휴일제외) • 처리시간 •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 처리 • 단, 고용/연수외국인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의 경우 해당외국인에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출석요구 및 공시송달을 위하여 최소 14일의 기간이 소요 (통상 3주)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관련법/제도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기타	전자민원은 위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신청가능하며, 방문 예약은 위 사유발생일 15일이 되는 날의 1일전까지 신청가능

■ 근로·취업개시

▼ H-2의 근로개시 및 취업개시 통합신고

H-2의 근로개시 및 취업개시 통합신고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나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그 사실을 통합신고(근로개시신고 및 취업개시신고) 하는 민원사무입니다.(통합신고란 하이코리아 상 신고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신고를 동시에 신고하는 시스템입니다.)
- 전자민원으로 신고 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고가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고 마감일 심각한 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신고가 불가하여 당일처리가 불가할 때는 반드시 관할 고용지원센터 및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공통 ○ 신청서 ○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 외국인등록증 ○ 해당사유별 입증서류 ○ 표준근로계약서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사본(간병인이나 가사보조인의 경우 고용주 신분 중 사본)
수수료	없음
처리과정	전자민원① 신청 -> ② 수수료결제 -> ③ 접수 -> ④ 처리
접수시간(처리시 간)	 접수시간 전자민원: 평일 07:00부터 22:00(토, 일, 공휴일제외) 처리시간 전자민원: 3일 이내
처리기관	출입국·외국인관서(출장소)/고용지원센터

소관부처	법무부 체류관리과/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관련법/제도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44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49조의2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4항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의3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기 타	전자민원은 위 등록사항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청가능

■ 자격변경

▼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변경허가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변경허가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만료일 전 현재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때 신청하는 민원으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예약이 가능한 민원입니다.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K-point E74) 자격변경은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없이 신청인의 출생 연도에 따라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통서류 ○ 신청서 (제34호 서식) ○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 외국인등록증 ● 체류자격별 세부 안내사항과 제출서류는 체류자격별 안내메뉴 얼(체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 재외동포(F-4)로 자격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허가 후 해외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였을 때에는 '해외범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경우 전자민원 대상이 아니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다만,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했더라도 아래 면제대상자는 전자민원 신청이 가능- 60세이상, 13세이하 동포-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포함)와 그 가족- 특별공로(공익증진) 동포☞ 유의사항 - 출입국외국인관서장(출장소장)은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신분관

	계 확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 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 11만 4천원
처리과정	전자민원 ① 전자민원 신청 -> ② 수수료 결제 -> ③ 관할출입 국·외국인관서 심사 처리 -> ④ 신청결과 조회 -> ⑤ 허가서 출력 -> ⑥ 외국인 등록록증 재발급 신청 방문예약 ① 방문예약 -> ②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접수시간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관련법/제도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0조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기타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K-point E74) 자격변경은 전자민원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방문민원 사전예약은 체류기간 만료일내 방문하고자 하는 날의 1일전까지 신청가능 (동 민원은 허가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출장소에 업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국내에서 형사처벌을받은 자는 전자민원 대상자가 아니므로 관할출입국·외국인관서를방문하여 민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형사처벌에 대한 사범심사를 받은 자 제외)

▼ 단기체류자의 체류자격변경허가 : **방문 예약 only**

체류자격외활동허가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예약이 가능한 민원입니다.

구비서류	공통 신청서(제34호 서식)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체류자격별 세부 안내사항과 제출서류는 체류자격별 안내메뉴 얼(체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수수료	 12만원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된 민원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수수료 면제국가 : 아르헨티나의 14세 미만
처리과정	방문예약① 방문예약 → ②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접수시간(처리시 간)	1. 방문예약 :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 가능2. 처리시간 : 통 상 3주에서 3개월가량 소요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관련법/제도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5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기타	방문예약은 체류기간 범위내에서 방문하고자하는 날의 1일전까 지 가능(허가 전에는 해당 체류자격외 활동 불가)

■ 자격부여

▼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부여 : 방문 예약 only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부여

-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주한미군제대자 또는 국민의 대한민국 국적상실 자 등 아래 대상자가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부여 받는 민원으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예약이 가능한 민원입니다.
 - 。 영주(F-5)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출생자녀로 20세미만인 자에 대하여 영주(F-5)자격 부여

-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하여는 체류목적에 따라 협정(A-3), 단기 종합(C-3), 방문동거(F-1), 거주(F-2), 기타(G-1)자격의 범위내에서 체류자격 부여
- 영주(F-5)자격을 가진자의 한국인 배우자가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거주(F-2, 기간 1년) 체류자격 부여
- 거주(F-2)자격 소지자의 한국출생자녀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부여
- 산업연수(D-3),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자격을 소지하고 체류중인자의 국내출생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부모의 체류기간) 체류자격 부여
- 국민처우를 받은자가 외국국적을 선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후 유학(D-2) 체류자격 부여

구비서류	공통 신청서(제34호 서식)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체류자격별 세부 안내사항과 제출서류는 체류자격별 안내메뉴 얼(체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수수료	 8만원 (단, 결혼이민 (F-6)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4만원)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된 민원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수수료 면제국가: 아르헨티나의 14세 미만 수수료면제대상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처리과정	방문예약① 방문예약 -> ②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접수시간	• 방문예약: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 가능 • 처리시간: 미정(통상 3주에서 3개월가량 소요)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관련법/제도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0조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기타	방문민원 사전예약은 위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1일 전까지 신청가능

▼ 단기체류자의 체류자격부여 : 방문 예약 only

단기체류자의 체류자격부여

-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주한미군제대자 또는 국민의 대한민국 국적상실 자 등 아래 대상자가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부여 받는 민원으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예약이 가능한 민원입니다.
 - 영주(F-5)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출생자녀로20세미만인 자에 대하여 영주(F-5)자격 부여
 -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하여는 체류목적에 따라 협정(A-3), 단기 종합(C-3), 방문동거(F-1), 거주(F-2), 기타(G-1)자격의 범위내에서 체류자격 부여
 - 영주(F-5)자격을 가진자의 한국인 배우자가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거주(F-2, 기간 1년) 체류자격 부여
 - 거주(F-2)자격 소지자의 한국출생자녀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부여
 - 산업연수(D-3),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자격을 소지하고 체류중인자의 국내출생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부모의 체류기간) 체류자격 부여
 - 국민처우를 받은자가 외국국적을 선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후 유학(D-2) 체류자격 부여

구비서류	• 공통
	◦ 신청서(제34호 서식)
	•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 체류자격별 세부 안내사항과 제출서류는 체류자격별 안내메뉴

	얼(체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여기를 클릭해 주세요</u>
수수료	 8만원 (단, 결혼이민 (F-6)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4만원)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된 민원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수수료 면제국가 : 아르헨티나의 14세 미만 수수료면제대상 체류자격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처리과정	방문예약① 방문예약 -> ②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 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접수시간	 방문예약: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 가능 처리시간: 미정(통상 3주에서 3개월가량 소요)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관련법/제도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0조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기타	방문민원 사전예약은 위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1일 전까지 신청가능

■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